

"Ever Safety" 고객과 함께하는 우리의 약속입니다

KEPCO 한국전기안전공사

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

수신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업무 수행범위 알림

1.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-764(2008.08.20)호 및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협(민원) 제2008-748(2008.08.25)호 관련입니다.
2.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6의2호 관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유권해석 내용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아 래

가. 일반용전기설비를 저압 자가용전기설비로 증설하는 경우

⇒ 전기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,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
나. 일반용 또는 저압 자가용 전기설비가 특별고압 자가용전기설비로 되는 경우

⇒ 특별고압 수전설비를 신설해야 하므로 공사비에 관계없이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(감리업체 감리대상임)

다. 건축물의 재건축, 증축 등에 의한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

⇒ 기존 수전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증축으로 전기설비가 증설되는 경우는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
라.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: 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 처리방법(p60)

현 행				개 정			
4.6 감리원 배치 확인방법				4.6 감리원 배치 확인방법			
공사별	감리자별 관리자	전기안전 관리자	감리업체 비고	공사별	감리자별 관리자	전기안전 관리자	감리업체 비고
① 자가용 수용설비 설치공사	x	o	신규설치 공사 <추가>	자가용 수용설비 설치공사	x	o	신규설치 공사, 특별 고압 수전설비 신설 공사
자가용전기 수용설비 변경공사	총 공사비 5천만원 미만	o	o	자가용전기 수용설비 변경공사	총 공사비 5천만원 미만	o	o
	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	x	o		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	x	o
비상용에비 압전설비 설치 또는 변경공사	총 공사비 1억미만	o	o	비상용에비 압전설비 설치 또는 변경공사	총 공사비 1억원 미만	o	o
	총 공사비 1억이상	x	o		총 공사비 1억원 이상	x	o

※ 자가용 전기설비가 모두 철거되고 고압이상 자가용전
기설비로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감리업체 감리업무
수행 가능함

※ 저압 전기설비가 고압이상 자가용전기설비로 되는
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
없음